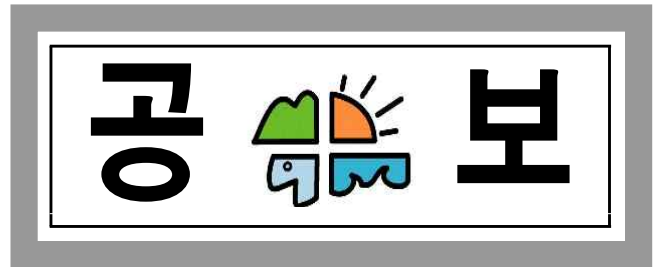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82호 2016년 3월 15일(화)

규 칙

-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3
○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4
○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입법예고 12
○ 속초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7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1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 1346 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중 별정직 6급상당 직류란 중 “비서실장”을 “비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별정직 6급 상당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연락불가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1.

속 초 시 장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6. 03. 18. ~ 04. 01.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6. 03. 11.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최영식	
	주 소 (대장상주소)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발한리 99번지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4번지
		건축물 현 황	1층 목조 주택 54.08㎡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033-639-2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보육 조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종전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명칭과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을 개정 법률에 의한 권장 표준안으로 보완함과 함께 어린이집 연합회에 대한 사업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용어정비 등 조례 문맥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속초시보육정보센터를 속초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위탁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보완 명시하며,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별도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나. 속초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 다. 속초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구성과 채용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안제15조)
- 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의한 권장 표준안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9조)
- 마.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2년 확대 함
(안 제21조제1항)
- 바. 비용보조지원 대상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을 삭제하고 대신 다문화가정 및 초과보육(방과후, 휴일, 야간)에 드는 비용을 추가 함(안 제22조제1항)
- 사.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과 보육교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 함(안 제2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여성가족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의견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저출산보육팀)
- 연락처 : 033-639-2043 (FAX 033-639-2739)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여성가족과(033-639-2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 하게 지원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임) 시장은 매년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자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보육시설의 장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3조(설치·운영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속초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 대학 ,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으로 하는 심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의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 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을 받은 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보육 전문 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4장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제17조(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시장은 공립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용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 등) ①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상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 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 시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②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제5장 비용의 보조 등

제22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법정 저소득층·다문화 가정·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및 방과 후 아동보육료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4. 초과보육(방과후, 휴일, 야간)에 드는 비용
5.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6. 보육교사 인건비
7. 교구·교재비
8.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9.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10.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
11.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

12.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 그 밖에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속초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하는 아동을 위한 사업
2. 관내 보육교직원의 직무향상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24조(보육시설 폐쇄 등)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입법예고

「속초시 환경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15일

속 초 시 장

1. 제 명 :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과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안 제22조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각 안 참조)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10호)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 환경위생과

(전화 : 033-639-2808, FAX : 033-639-2386)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환경위생과(☎ 033-639-280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명확히하고”를 “명확히 하고”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의 상태”를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물”을 “물, 토양”으로, “악취 등”을 “악취, 일조(日照)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악취 등으로서”를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오염으로부터”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로, “오염된 환경”을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 중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을 “수립하여 시행할”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

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를 “사업활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로 하고, “시책에 협력 할”을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할”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속초시환경기본계획”을 “속초시환경보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4항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0조의3까지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제10조의3 중 “의거”를 “따라”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을 “환경오염 을 신고한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야기한 자는”을 “일으킨 사람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를 “관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찬서”를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정보의 제공등)”을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하며, 같은 조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시책에 대하여는”을 “시책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u>명확히</u> 하고, 환경보전정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명확히 하고</u> ----- ----- ----- -----.
제2조(기본이념) (생략)	제2조(기본이념)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생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1. “환경”이란 ----- -----.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u>자연의 상태</u> 를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 ----- ----- <u>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u> 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u>악취</u>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u>악취</u> , <u>일조(日照)</u> 등----- -----.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	4. “환경오염”이란 -----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
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 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
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
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
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
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
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
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
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
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환경오염원을

-----악취, 일
조방해 -----등으로서

-----.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
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
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
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
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오
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

<삭 제>

<삭 제>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 9. (생략)

<신 설>

10. 기타 환경보전·환경훼손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수립하여 시행 할-----.

1. ~ 9. (현행과 같음)

10.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환경보전·환경훼손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 할 책무를 진다.

② ~ ④ (생략)

제6조(시민의 권리)

①·② (생략)

제7조(시민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2장 환경보전시책

제8조(환경기본계획)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 (생략)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 속초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민의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시민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장 환경보전시책

제8조(환경보전계획) ①-----

-----속초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
-----.

②-----환경계획-----
-----각 호-----
-----.

1.~ 5. (생략)

③-----환경계획-----

-----.

④-----
-----환경계획-----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생략)

②(생략)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2. · 3. (생략)

③(생략)

제10조(재정지원)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방의제21추진) ①시장은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에서 행하는 환경보전활동 소요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생략)

제10조의3(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

--.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범위에서-----
-----.

2. · 3.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 -----

범위에서-----.

제10조의2(지방의제21추진) ①---

-----범위에서-----.

②(현행과 같음)

제10조의3(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

상 등)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포
상조례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포
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
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조치) (생략)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생략)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
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
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3장 속초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제13조(설치) 시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속초시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구성·임기) ①위원회는 위
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
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
회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
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상 등)-----

-----따라-----
-----환경오염을 신고한 사람
에게는-----
-----범위에서-----
-----.

제11조(규제조치) (현행과 같음)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일으킨 사람은-----

-----.

제3장 속초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제13조(설치) -----
관한-----

-----.

제14조(구성·임기) ①-----

-----풍부
한 사람-----

-----.

② (생략)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4. (생략)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략)

제17조(회의) ① (생략)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서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등) (생략)

제4장 정보의 제공과 시민참여 등
제19조(정보의 제공등) ①시는 환
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
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
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시민의 참여)

①·② (생략)

제21조(환경교육·홍보)

①·② (생략)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능) -----각 호
-----.

1.~4.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찬성으로-----.

제18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4장 정보의 제공과 시민참여 등
제19조(정보의 제공 등) ①-----

---범위에서-----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시민의 참여)

①·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환경교육·홍보)

①·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

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3조(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생략)

-----실시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
-----위한-----
-----시책에는 ----

-----.

제2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 제 법 령 발 체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

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18조(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속초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15일

속 초 시 장

1. 제 명 :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현 조례 상 농작물에 한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여지가 있고 상위법에서 정한 피해보상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므로
-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및 예방의 적용범위에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어업 및 인명피해도 포함시키고 피해보상 대상의 주소지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 경비 예산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함.

3. 주요내용

- 조례제명을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피해보상 대상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 농작물뿐만 아니라 산림작물·수산양식물 및 인명피해도 피해보상 및 예방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 경비 예산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 환경위생과

(전화 : 033-639-2808, FAX : 033-639-2386)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환경위생과(☎ 033-639-280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임업·어업의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수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3.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속초시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피

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중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업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설치하는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제외 대상) ① 농작물 등의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② 인명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포함한다.)
3. 피해자가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자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보상 지급기준)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비율은 피해액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자부담에 의한 피해 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④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피해예방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액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3. 농작물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영랑동장, 노학동장, 조양동장, 대포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법인에 한한다)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교육
3. 삭제 <2012.2.1.>
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 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

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